

의안번호	2211532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5.8.11.
추계번호	25D3595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3(심리상담 등)	통일부장관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6조의5(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)	북한이탈주민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됨 -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-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	의무규정
3	안 제27조의2(위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)	통일부장관은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, 주거불안, 질병,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, 주거지원,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3(심리상담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6조의5(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)	
3	안 제27조의2(위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상담 등 실시(안 제22조의3)

- 현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신과 방문 진료 및 외부기관 협업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, 개정안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어려움

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(안 제26조의5)

-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2¹⁾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위기의심 상시관리 대상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사실 불분명, 6개월 이상 소득 없음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경우 보건·복지·고용·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 등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및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 액수, 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액을 추정하기 어려움

□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(안 제27조의2)

- 현재 통일부는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, 보호기간과

1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2(통합사례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,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,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·복지·고용·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.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·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계없이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,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, 주거불안, 질병,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, 주거지원,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이 지원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참고로 통일부는 2025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[표 1] 2025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	세부사업	예산
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(2331-300)	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·조정	162
	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	450
	탈북청소년 교육 지원	5,062
	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	3,387
	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	156
	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	7,728
	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	-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(2331-302)	-	35,086
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정보화) (2331-500)	-	578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(2337-301)	정착기본금	5,009
	주거지원금	6,610
	정착장려금	3,966
	보로금	738
	가산금	90
	고용지원금	-
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(2337-302)	-	11,760

자료: 통일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